
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
기금운용계획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[전문위원 강 철 구]

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8. 21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0. 8. 24.

2. 예산안 규모

가. 총괄(예산서 9p)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	기정예산	증감액	증감률 (%)
계	662,832,288	619,550,525	43,281,763	6.99
일반회계	595,499,241	555,767,107	39,732,134	7.15
특별회계	67,333,047	63,783,418	3,549,629	5.57

-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2억 8,176만 3천원이 증액(6.99%)된 6,628억 3,228만 8천원으로 편성
 - ▶ 일반회계 예산은 5,954억 9,9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억 3,213만 4천원이 증액(7.15%)
 - ▶ 특별회계 예산은 673억 3,3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4,962만 9천원이 증액(5.57%)

나. 세입예산(일반+특별)(예산서 10p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	기 정 액	비교증감		
			증감액	증감률(%)	
합 계	662,832,288	619,550,525	43,281,763	6.99	
일반회계	소 계	595,499,241	555,767,107	39,732,134	7.15
	지방세수입	33,895,790	33,896,190	△400	0.00
	세외수입	13,564,242	13,564,242	0	0.00
	지방교부세	242,344,200	251,778,200	△9,434,000	△3.75
	조정교부금등	32,237,641	29,763,919	2,473,722	8.31
	보조금	193,312,754	170,742,956	22,569,798	13.22
	보존수입등내부거래	80,144,614	56,021,600	24,123,014	43.06
기타특별회계	28,577,753	27,198,970	1,378,783	5.07	
공기업특별회계	38,755,294	36,584,448	2,170,846	5.93	

○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2억 8,176만 3천원이 증액(6.99%)된 6,628억 3,22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- ▶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,954억 9,9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억 3,213만 4천원이 증액(7.15%) 되었고,
- ▶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5억 7,775만원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,878만 3천원이 증액(5.07%) 되었으며,
- ▶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7억 5,5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,084만 6천원이 증액(5.93%) 되었음.

다. 세출예산(일반+특별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	기 정 액	비교증감	
			증감액	증감률(%)
합 계	662,832,288	619,550,525	43,281,763	6.99
일반회계	소 계	595,499,241	39,732,134	7.15
	의회운영위원회	888,962	△103,699	△10.45
	총무위원회	320,306,297	30,211,663	10.41
	산업건설위원회	274,303,982	9,624,170	3.64
기 타 특 별 회 계	28,577,753	27,198,970	1,378,783	5.07
공 기 업 특 별 회 계	38,755,294	36,584,448	2,170,846	5.93

○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2억 8,176만 3천원이 증액(6.99%)된 6,628억 3,22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○ 회계·소관별로 살펴보면

- ▶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억 8,89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69만 9천원이 감액(10.45%)되었으며,
- ▶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,203억 6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억 1,166만 3천원이 증액(10.41%)되었으며,
- ▶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,743억 39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 2,417만원이 증액(3.64%)되었음.
- ▶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5억 7,77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,878만 3천원이 증액(5.07%) 되었음.
- ▶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7억 5,5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,084만 6천원이 증액(5.93%) 되었음.

3. 예비심사 결과

가. 의회운영위원회

- 세입·세출예산안 : 해당 없음
- 세입·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: 해당 없음
- 세입·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: 해당 없음

나. 총무위원회

- 세입예산안
 - 일반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 - 특별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세출예산안
 - 일반회계 : **1건에 5,300천원을 감액하고,**
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 - 특별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: 해당 없음
-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
 -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사업명			통계목 (부기명)	요구액	증감액	조정액	사 유	페이지
		정책	단위	세부						
	계				1건	5,300	▲5,300	0		
1	문화관광과	문화예술진흥	문화원 운영	문화원 사업활동 및 운영	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(복합문화관 강좌운영)	5,300	▲5,300	0	불요불급	p142

-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: 해당 없음
-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: 해당 없음

다. 산업건설위원회

○ 세입예산안

- 일반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특별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○ 세출예산안

- 일반회계 : **3건에 660,000천원을 감액하고,**
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- 특별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○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

- 일반회계 : 해당없음
-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○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

-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사 업 명			통계목 (부기명)	요구액	증감액	조정액	사 유	페이지
		정책	단위	세부						
	계				3건	660,000	▲660,000			
1	경제 교통과	대중교 통 육성 지원	교통안 전시설 확충	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	농어촌버스 단 일요금제 손실 보상금	510,000	▲510,000	0	예산과다	p247
2	농업기 술센터	농업소 득 인프라 구축	친환경 농업 육 성	친환경농업 지원	친환경벼짚환원 사업 보상금	120,000	▲120,000	0	불요불급	p313
3	농업기 술센터	행복농 촌	농산물 마케팅 고도화	APC 시설 보완 지원	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보완	30,000	▲30,000	0	불요불급	p319

- 특별회계 : 해당 없음

○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: 해당 없음

○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: 해당 없음

4. 주문사항 : 해당없음

[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8. 21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0. 8. 24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3.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9년말 조 성 액 ①	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		2020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 입 ②	지 출 ③		
합 계	160,147,530	2,578,200	10,020,228	152,705,502	△7,442,028
재정안정화적립금	160,000,000	2,560,000	10,000,000	152,560,000	△7,440,000
식품진흥기금	147,530	18,200	20,228	145,502	△2,028

4. 검토의견

▣ 재정안정화적립금<기획예산담당관>[p25]

- 재정안정화적립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및 「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하여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.
- 2020. 7. 28. ~ 8. 11. 간 지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2020. 8. 24.)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전한 조기 복구를 위해 재난·재해 예비비로 100억원을 전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▣ 식품진흥기금<민원소통과>[p31]

- 식품진흥기금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
- 공익신고로 인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청구에 따라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 상환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예비 심사결과

- 총무위원회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